

파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703
----------	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01년 11월 23일

제안자 : 총무보사위원회

위원장 이재일

1. 수정이유

- 동 제정조례안 제13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있어 동 계획안을 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 규정에 의거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·세출예산안과 함께 시의회에 제출토록 하였는바, 이와 관련 동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동 제정조례안 제13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있어 동 계획안을 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 규정에 의거 타 기금관련 조례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다음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는 문안의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.

수 정 안 대 비 표

현 행	수 정 안
제13조 (기금운용계획) ①-②(생략) (신설)	제13조 (기금운용계획) ①-②(현행과 같음)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 안은 다음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파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한수정안

파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3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다음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